

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1. 7. 26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시행 '21.1.1.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예정된 처분사유	예정된 처분내용		
1	김O환	64.03.23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	1회차 구직촉진수당 수급이후 3차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	○ 취업지원종료 처분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수취인 불명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길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 7. 26. ~ 2021. 8. 9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근화(Tel. 031-412-66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